

수산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36
----------	-------

발의연월일 : 2026. 8. 24.

발 의 자 : 황운하 · 정춘생 · 차규근
이해민 · 강경숙 · 김준형
신장식 · 서왕진 · 김선민
김재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범칙행위의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안 제58조제4항).

법률 제 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 중 “수사는 검사와”를 “수사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통칙) ① ~ ③ (생 략)	제58조(통칙)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범칙행위에 대한 <u>수사는 검 사와</u>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 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 라 한다)이 전속적으로 행한다.	④ ----- <u>수사는</u> --- ----- ----- ----- ----- -----.